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66호 2020. 6. 23.(화)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63호	남해군 자율방법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464호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남해군 조례 제2465호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7
남해군 조례 제2466호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남해군 조례 제2467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남해군 조례 제2468호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17
남해군 조례 제2469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남해군 조례 제2470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남해군 조례 제2471호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30

##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76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3
---------------	-------------------------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100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42
남해군 고시 제2020-103호	초전 하수구처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47
남해군 고시 제2020-106호	답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48
남해군 고시 제2020-10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봉천)	.....50
남해군 고시 제2020-109호	남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3-56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51
남해군 고시 제2020-110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53

## 공 고

남해군 보건소 공고 제2020-11호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56
남해군 공고 제2020-774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0
남해군 공고 제2020-777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66
남해군 공고 제2020-787호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68
남해군 공고 제2020-801호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81
남해군 공고 제2020-814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84
남해군 공고 제2020-817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공람·공고	.....86
남해군 공고 제2020-818호	정치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89
남해군 공고 제2020-829호	이동면 초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 분묘개장 공고(2차)	.....90
남해군 공고 제2020-839호	군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교통광장) 공사완료 공고	.....91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6, 행정 3046)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63호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과 방법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법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등으로 구성되어 제4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방범대 대원은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남해경찰서 관할 부서에 방범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 ③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 ④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군에 1개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외국인 명예경찰대 대원은 군에 거주하거나 군에 위치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등으로 남해경찰서에 방범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②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2.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군 행사 협조·지원
4. 체류 외국인 관련 정보의 교류 및 범죄피해자 지원
5.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방범대 대원으로 구성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 남해군자율방범대연합회, 외국인 명예경찰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등이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설치 및 수선비용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용
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간식비용

4. 방법대등 소속 대원의 사기진작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 등 행사비용
  5.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비용
  6. 그 밖에 지역사회 치안 및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남해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사업비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법대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법·순찰 활동에 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남해경찰서장으로부터 방법대의 임무를 게을리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방법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법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방법대등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연합회 구성 및 기능)** ① 각 읍·면 방법대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남해군자율방법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각 읍·면 방법대의 대장과 임원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③ 연합회는 지역 간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합동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한다.

④ 연합회는 각 읍·면 방법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방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방법대등 또는 그 대원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군수는 남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법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법대, 연합회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이 조례에 따른 방법대, 연합회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464호

##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남해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남해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관계 구축)**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부담)** 제5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남해군과 도교육청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분담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행복교육지구 평가)** 군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65호

##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복지 증진**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
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사업
3.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4.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적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건강·보육(교육)·복지 등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학대 예방·방지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4. 아동급식 지원 사업
5. 아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련 행사 또는 사업
6.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7.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
8.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지원 사업
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워크숍 등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 아동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8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우선 보호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4장 아동위원

**제18조(아동위원)**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남해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9조(구성)** ① 아동위원은 읍·면별 각 2명 이상 4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지역사회에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③ 아동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0조(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 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회 구성 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회의 임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남해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협의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협의회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관리
  -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 3. 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연구
  - 4.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 5.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각종 행사 지원 사업
  - 6. 보호대상아동 결연·후원 사업
  -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재정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제20조의 임무와 제22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행사지원 사업비
2. 보호대상아동 결연·후원사업비
3. 아동위원 간 정보교류 및 사기진작 관련 필요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장 드림스타트

**제24조(드림스타트)**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25조(사업)** 드림스타트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 조사,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5.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자문을 위하여 남해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남해군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과 갖춘 사람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와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8조(기능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의 총괄 조정을 위한 전년도 사업 수행내용 및 금년 사업계획 수립·평가
2. 사업지역 및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 지원, 예산운용
3. 지역자원 개발·연계 및 관리, 지자체 내 광역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장 보칙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지침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남해군 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남해군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466호

###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일반회계의 전입금
- 3.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제4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67호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취락지구)에서” 를 “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4. 위치: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5.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



- 6. 안전: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 ③ 제1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468호

##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남해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 가. 수도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라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따른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과 파손예방시설 설치비용을 그 원인을 일으킨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수도시설을 파손하는 등 그 원형을 변형시킨 경우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 사용경비”란 수도시설의 파손 등 이에 따른 공사로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이용하여 급수를 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에 따라 파손되거나 원형이 바뀐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 수도시설 공사에 따라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얼어붙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의 파손 등 원형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원인자 확인과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비용 산정 및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등 원형의 변형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시설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원인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 등 원형의 변형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3. 공항건설사업
4.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5. 그 밖에 개발사업에 따르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발사업 중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용량

②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시설 설치비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 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에 따른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관계공무원의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 등에 따른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금
9. 홍보비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은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
2. 누수 및 퇴수에 따라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
3. 급수차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지역시장가격에 따라 산정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하여 산정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한 관계공무원 및 차량에 대한 경비로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여 산정하고 관계공무원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6. 지원경비는 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등의 작업을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합리적으로 청구한 금액을 산정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하여 산정
8. 작업시간은 작업을 위한 출발시간부터 현장작업이 완료된 후 1시간까지로 하고, 작업 8시간을 1일로 산정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그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복구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공사를 한 다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부담금의 산출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⑤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수도공사의 원인 또는 결과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1. 다수인의 공동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또는 파손한 경우
-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 등의 성격상 책임이 있는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의 정산)** ① 군수는 원인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정산결과 실제 수도공사에 소요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추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출근거 및 반환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명시한 서면을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 군수는 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제8조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인자와의 협의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한다.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부과·징수행위로 본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text{순자산}/\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

1. “단위사업비”란 남해군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순자산”이란 남해군이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남해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른다.
3. “시설용량”이란 남해군의 자체 정수용량과 광역상수도의 광역배분계획량의 합을 말한다.
4. “수돗물사용량”이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남해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5.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 소요 공사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고,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6. 단위사업비는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7. 시설용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남해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순자산과 시설용량을 재적용 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text{ (오리피스공식)}$$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 \times 3600$$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256ap^{1/2}$$

Q1 = 초당 손실수량(m <sup>3</sup> /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m <sup>3</sup> /hr)
C = 유량계수(Ca × Cv)	
Ca = 수축계수(0.666적용)	Cv = 유속계수(0.97적용)
∴ C = 0.666 × 0.97 = 0.64	
A = 면적(m <sup>2</sup> ) = 10,000a(cm <sup>2</sup> )	g = 중력가속도(9.8m/sec <sup>2</sup> )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 <sup>2</sup> )
(수두 10m는 수압 1kg/cm <sup>2</sup> 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체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 <sup>3</sup> )	A = 면적(m <sup>2</sup> )	L = 연장 (m)
---------------------------	-------------------------	------------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남해군 조례 제2469호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감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하며, 나목의 경감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사용요금의 50% 이내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사용요금의 50% 이내

제40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 설 분 담 금 (제14조 관련)

계량기 관 지름별(mm)	분 담 금 액(원)	비 고
13	110,000	
20	308,000	
25	496,000	
32	882,000	
40	1,489,000	
50	2,283,000	
75	5,538,000	
100	9,443,000	
150	20,574,000	
200	29,218,000	

※ 급수관의 지름확대 공사의 경우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남해군 조례 제2470호

##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으며, 제1호나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 하수도 요금 감면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군수”를 “그 밖에 군수”로, “기타 필요”를 “필요”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감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하며, 나목의 경감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사용요금의 50% 이내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요금의 50% 이내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공급받아 재이용하는 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7]

**중수도·빗물이용시설·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업 종 / 구 분	감 면 비 율	
	중 수 도· 빗물이용시설	재이용수
가 정 용	-	30%
업 무 용 · 영 업 용	60%	15%
욕 탕 용	40%	15%
산 업 용	60%	30%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

남해군 조례 제2471호

##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등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남해군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을 둔다.

③ 병해충 예찰·방제반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행정지원반장은 농업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각 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병해충 분야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
9.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

**제7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4조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 동정(同定) 등의 전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제비와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비 지원 시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76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명”을 “명(남/여)”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가족수”를 “가족수(남: 명/여: 명)”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성 명” 을 “성 명 (남/여)” 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3호 중 “성 명” 을 각각 “성 명(남/여)” 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명” 을 “(남/여)서명”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 를 “: (남/여)” 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신청인” 을 “신청인 (남/여)” 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b>급 수 공 사 신 청 서</b>	결	담당자	팀장	과장	부군수	군수
	재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수도위치	남해군 읍(면) 리 번지					
급수종별	공사구분	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				
월소요량	근수전수 및 규격					
건물허가유무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건축주	남/여	확인자	남/여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 하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

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설계수수료 납부확인	사 용 료 납부확인

### 접수 및 처리과정

처리기간			처리과정
접 수	경 유	최 종	
읍.면		상하수도과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



[별지 제4호서식] (제9조제1항 관련)

### 급수종별 변경 신고서

아래와 같이 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수도전소계지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		수도 전 대상정리	조정부 정리	수남(체남) 정리부	섬침카드 정리	결재		
	사용자 또는 관리자	(남/여)					담당자	팀장	과장
수도전소유자									
급수종별									
변경하고자 하는 급수종별									
변경의 사유									
급수실태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제9조제2항 관련)

### 직 권 업 종 변 경 조 서

수도전 소재지	수도전번 호	수도전 소유자	급수종별		변경사유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	수도전 대상정리	조정부 정리	검침카드 부정리	수남(체 남)부경 리	결제			
			현업종	변경업종							담당자	팀장	과장	
		(남/여)												

상기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수도관계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별지 제12호서식] (제19조 관련)

###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

접수일자	과 장
	팀 장
접수번호	담당자

신청인	성명 (수용가명) ( )	(남/여)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누수수리 일자			누수수리 비용	
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 유				
수용가번호				
업종		구경 (mm)		
월평균 사용량		m <sup>3</sup>	옥내누수량	m <sup>3</sup>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별지 제18호서식]<신설>

## 소상공인 수도요금 등 감면 신청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남/여)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현)상시근로자
소 재 지				
<b>※ 업체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b>				
수도 현황	수도요금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수용가번호	
	부과업종	<input type="checkbox"/> 대중탕용	(관리번호)	
<b>※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b>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수도요금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요금 감면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에 기재한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 1]에 따른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  동의함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 :  동의함  동의안함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나목 및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 100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남해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남 해 군 수

I. 세입·세출결산

1. 총 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663,050,914,750	673,279,715,716	501,956,992,737	171,322,722,979
일 반 회 계	547,662,710,460	558,092,891,981	449,968,356,289	108,124,535,692
특 별 회 계	115,388,204,290	115,186,823,735	51,988,636,448	63,198,187,287
상 수 도 특 별 회 계	22,294,719,000	22,341,530,628	18,897,015,640	3,444,514,988
의 료 급 여 기 금	955,887,000	945,175,272	719,263,648	225,911,62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225,820,000	2,202,053,985	1,383,963,000	818,090,985
발 전 소 주 번 지 역 지 원 사 업	816,700,000	821,189,308	372,841,340	448,347,968
환 경 기 초 시 설	36,887,705,290	36,658,012,223	30,516,294,820	6,141,717,403
청 사 건 립	52,207,373,000	52,218,862,319	99,258,000	52,119,604,319

2.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b>합 계</b>	<b>663,050,914,750</b>	<b>675,383,853,812</b>	<b>673,279,715,716</b>	<b>2,046,901,386</b>
일 반 회 계	547,662,710,460	560,087,804,957	558,092,891,981	1,937,676,266
특 별 회 계	115,388,204,290	115,296,048,855	115,186,823,735	109,225,120
상 수 도	22,294,719,000	22,391,317,398	22,341,530,628	49,786,770
의 료 급 여 기 금	955,887,000	945,175,272	945,175,272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225,820,000	2,202,053,985	2,202,053,985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	816,700,000	821,189,308	821,189,308	0
환 경 기 초 시 설	36,887,705,290	36,717,450,573	36,658,012,223	59,438,350
청 사 건 립	52,207,373,000	52,218,862,319	52,218,862,319	0

3.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b>합 계</b>	<b>663,050,914,750</b>	<b>501,956,992,737</b>	<b>81,064,278,870</b>	<b>54,512,166,073</b>
일 반 회 계	547,662,710,460	449,968,356,289	72,267,657,590	20,960,171
특 별 회 계	115,388,204,290	51,988,636,448	8,796,621,280	54,491,205,902
상 수 도	22,294,719,000	18,897,015,640	3,224,265,100	173,438,260
의 료 급 여 기 금	955,887,000	719,263,648	0	149,373,192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225,820,000	1,383,963,000	0	841,857,000
발전소주변지역지 원 사 업	816,700,000	372,841,340	114,716,000	309,995,000
환 경 기 초 시 설	36,887,705,290	30,516,294,820	5,457,640,180	908,427,450
청 사 건 립	52,207,373,000	99,258,000	0	52,108,115,000

남 해 군 공 보

(44) 제 666 호

2020년 6월 23일

4. 결산상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81,064,278,870	35,819,697,042	10,735,398,268	34,509,183,560	4,366,736,979	85,891,707,130
일	반 회 계	72,267,657,588	32,302,133,212	10,211,194,206	29,754,330,170	4,342,457,769	31,514,420,333
특	별 회 계	8,796,621,280	3,517,563,830	524,204,060	4,754,853,390	24,279,210	54,377,286,797
상	수 도	3,224,265,100	3,174,460,450	49,804,650	0	710	220,249,178
	의료급여기금	0	0	0	0	0	225,911,624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금	0	0	0	0	0	818,090,985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114,716,000	0	114,716,000	0	19,147,660	314,484,308
	환경기초시설	5,457,640,180	343,103,380	359,683,410	4,754,853,390	5,130,840	678,946,383
	청사건립	0	0	0	0	0	52,119,604,319

II.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1. 예산이용 : 없음

2. 예산전용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예산액	전용금액		
			감 액	증 액	
합	계	3건	821,350,000	52,239,000	52,239,000
일	반 회 계	2건	340,500,000	51,439,000	51,439,000
특	별 회 계	1건	480,850,000	800,000	800,000

3. 예산이체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예산액	전용금액		
			감 액	증 액	
일	반 회 계	75건	21,596,748,630	21,596,748,630	21,596,748,630

III.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 반 회 계	39건	2,959,694,000	2,518,232,900	91,047,340	350,413,760

IV. 재무제표 결산 요약

(단위 : 원)

연도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19년	2,131,304,627,055	11,753,997,498	2,119,550,629,557	357,016,187,809	432,161,248,869	(75,145,061,060)
2018년	2,053,527,735,656	9,252,113,708	2,044,275,621,948	304,041,911,287	373,676,499,066	(69,634,587,779)
증 감	77,776,891,399	2,501,883,790	75,275,007,609	52,974,276,522	58,484,749,803	(5,510,473,281)

V. 채권 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2,707,644,160	48,405,000	214,790,000	2,541,259,160
일 반 회 계	2,415,263,720	0	212,940,000	2,202,323,720
기 타 특 별 회 계	292,380,440	48,405,000	1,850,000	338,935,440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106,051,760	0	1,850,000	104,201,76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186,328,680	48,405,000	0	234,733,680

VI. 채무 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소멸액	당해연도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0	0	0	0
특 별 회 계	0	0	0	0
상 수 도 특 별 회 계	0	0	0	0

# 남 해 군 공 보

(46) 제 666 호

2020년 6월 23일

VII. 성과보고서 요약

(단위 : 개)

구분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 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미달성 (100% 미만)
<b>합 계</b>	18	84	220	36	115	69

VIII. 기금 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b>계</b>	<b>10,654,950,967</b>	<b>16,682,416,650</b>	<b>1,892,204,730</b>	<b>25,445,162,887</b>
재정안정화적립금	0	16,000,197,260	0	16,000,197,260
중소기업육성기금	1,643,741,347	126,356,690	13,354,800	1,756,743,237
재난관리기금	816,214,033	409,436,640	503,183,980	722,466,693
양성평등기금	1,029,779,750	17,032,370	15,000,000	1,031,812,120
식품진흥기금	41,803,710	17,090,670	17,220,000	41,674,380
마늘명품화기금	7,123,412,127	112,303,020	1,343,445,950	5,892,269,197

IX.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구분	공유재산		정수물품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b>계</b>		<b>644,768,521,045</b>	<b>942건</b>	<b>8,427,874,973</b>
토지	14,871,355㎡	217,022,630,361		
건물	286,627㎡	142,902,376,969		
기타	49,846건	284,843,513,715		

남해군 고시 제2020 - 103호

**초전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고시**

남해군 미조면 초전마을 일원의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남 해 군 수**

## 1. 하수처리구역 결정조서

연번	구역명	위 치	면 적(km <sup>2</sup> )	비고
1	초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99-1번지 일원	0.16km <sup>2</sup>	

## 2. 하수처리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초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99-1번지 일원	신설	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에 따름

## 3.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하수처리구역도 공람장소 : 남해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55-860-3334)



남해군 고시 제2020 - 106호

## 답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답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답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답하마을회관 리모델링 : 기존 마을회관 2층 증축(증축면적 A=105.69㎡)
    - 생태주차장 조성 : 조성면적(A=938㎡)
    - 안전계류장 조성 : 향후분
    - 마을 연결길 정비 : 마을진입부 정비, 도로폭 확장
    - 재난방재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 : CCTV, 안내판, 응급구조 장비 등
  - 지역소득증대
    - 답하체험센터 건립 : 지상 1층, A=149.56㎡
    - 어린이해양체험공간 조성(향후분)
  - 지역경관개선 : 해안산책로 조성(벌레퇴치기, 벤치, LED가로등 등)
  - 지역역량강화계획 : 교육, 컨설팅, 홍보, 정보화
4. 총 사업비 : 1,864백만원(국비 466, 지방비 1,295, 기타 103)
5.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5년간)
6. 위치 :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답하마을 일원

7. 사업의 효과 : 답하마을의 정주여건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소득증대 추진으로 지속적인 마을 발전 도모
8.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9.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화(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0 - 108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봉천(지방하천)
2. 성 명 : 박범\*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4. 점용목적 : 성토로 인한 부지평탄화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7번지, 645-1번지
6. 점용면적 : 275㎡(241㎡/34㎡)
7. 점용기간 : 2020. 6. 17. ~ 2021. 6. 16.(1년)

남해군 고시 제2020 - 109호

**남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3-56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 공고 제2020-155호(2020.02.06.)로 공람·공고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50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남해군보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조서 : 붙임 참조
-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 및 남해군 보건소(☎055-860-8749)에 비치]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56	6	국지 도로	263	중로 2-1	아산리 150-4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 3-56호선	○노선 신설 - 연장 : 263m - 폭원 : 6m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

2.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사회복지시설	남해읍 아산리 150번지 일원	-	증) 6,537	6,537	-	

■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20% 이하	100% 이하	3층 이하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6,537㎡	○노인인구 증대에 따라 남해군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남해군의 부족한 복지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금회 군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남해군 고시 제2020 - 110호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0-285호(2020.06.11.)로 고시된 남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붙임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가능)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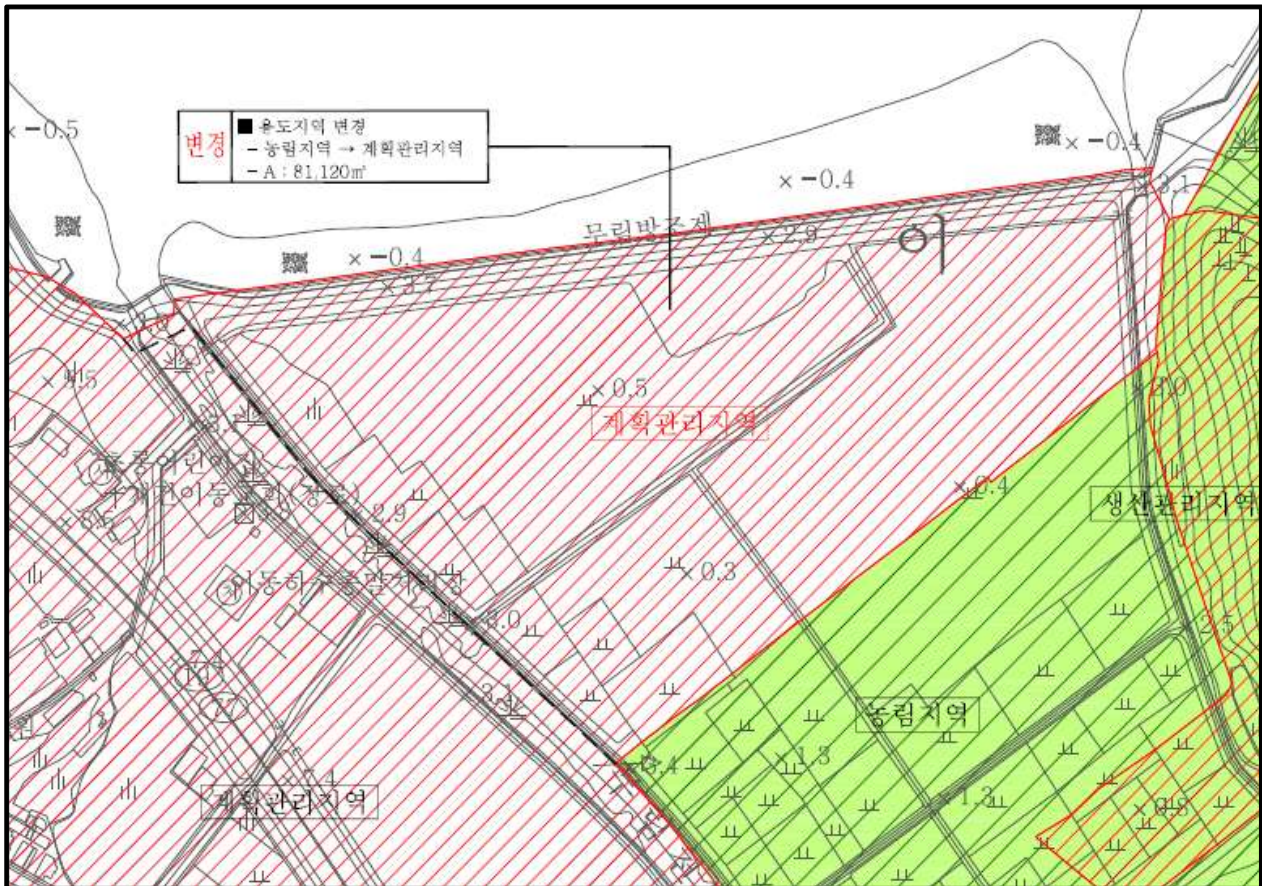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90,215.7	-	579,490,215.7	100.00		
육지부합계		357,678,651.7	-	357,678,651.7	61.72		
도 시 지 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4		
	주 거 지 역	소계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상 업 지 역	소계	183,713.0	-	183,71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 지 지 역	소계	10,352,602.0	-	10,352,602.0	1.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5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34		
관 리 지 역	소계	136,571,188.7	증)81,142.0	136,490,046.7	23.55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7,236,052.1	-	47,236,052.1	8.15		
	생산관리지역	53,325,240.0	-	53,325,240.0	9.20		
	계획관리지역	36,009,896.6	증)81,142.0	36,091,038.6	6.23		
농림지역		153,977,522.0	감)81,142.0	153,896,380.0	26.56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	55,328,658.0	9.55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28		

주) 기정은 남해군 고시 제2020-66호(2020.04.20.)로 고시된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기준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남해군이동면무리리 1164-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1,142	100	◦대상지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참고용)





공 고

남해군 보건소 공고 제2020 - 11호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장려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헌혈 권장활동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라.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헌혈 장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을 제출할 곳

- 1) 주 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보건소 공공의약팀
- 2) 연락처 : 팩스 055-860-8799, 전화 055-860-8747, 874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보건소 공공의약팀(전화 055-860-87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헌혈 장소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남해군 관리 공유재산에 대해 헌혈 장소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헌혈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774호

##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 2.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2조(정의)의 이용료 정의를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을 익스트림 스포츠시설과 스카이워크 그네를 추가하고 둘의 시설을 “전망대 체험시설”로 정함
- 제6조(손해보험 가입)의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을 “전망대 체험시설”로 문구 수정
- 제9조(운영 및 휴장)의 전망대 체험시설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로 수정
- 제10조(이용료)의 시설 중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을 체험시설로 하고 [별표1]을 [별표]로 수정함
- 제11조(이용료 감면)의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을 “전망대 체험시설”로 문구 수정
- 제13조(이용의 제한·금지 등)의 이용의 제한 중 만7세 미만에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을 별표의 전망대 체험시설로 변경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073, 팩스 860-3739, e-mail : n0820711@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전화 055-860-30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스포츠시설”을 “스포츠시설과 스카이워크 그네(이하 “전망대 체험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을 “전망대 체험시설”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망대 체험시설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중 “시설 중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을 “체험시설”로,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을 “전망대 체험시설”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을 “별표의 전망대 체험시설”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망대 체험시설 (제9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호 관련)**

1. 익스트림 스포츠시설(대지포 전망대)

가.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 인	소 인
개 인	3,000	2,000
단 체	2,000	1,000

- 1) 소 인 :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 2) 대 인 : 만19세 이상
- 3)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나. 운영시간 : 09:00 ~ 18:00

2. 스카이워크 그네(설리 스카이워크)

가.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 인	소 인
개 인	6,000	5,000

- 1) 소 인 :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 2) 대 인 : 만19세 이상

나. 운영시간 : 09:00 ~ 18:00(스카이워크는 21:00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이용료”란 <u>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의</u> 이용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스포츠시설과 스카</u> <u>이워크 그네(이하 “전망대 체험시설”</u> <u>이라 한다)</u> ----- ---</p>
<p>제6조(손해보험 가입) ① (생 략)</p> <p>② 수탁자는 <u>익스트림 스포츠시설</u> 운영과 관련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6조(손해보험 가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전망대 체험시설</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운영 및 휴장) ① <u>익스트림 스포츠</u> <u>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u> <u>시까지, 스카이워크의 운영시간은 오전</u> <u>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u> 다만, 계 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 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9조(운영 및 휴장) ① <u>전망대 체험시설</u> <u>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이용료) <u>전망대 시설 중 익스트림</u> <u>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u> <u>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u> <u>다.</u></p>	<p>제10조(이용료) ----- <u>체험시설</u>----- ----- <u>별표</u>----- -----.</p>
<p>제11조(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u>익스트</u> <u>림 스포츠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u> <u>감면 할 수 있다.</u></p> <p>1. ~ 5. (생 략)</p> <p>② (생 략)</p>	<p>제11조(이용료 감면) ① ----- ----- <u>전망</u> <u>대 체험시설</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13조(이용의 제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망대 중 옥상전망대,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스카이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만7세 미만 :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의 경우
4. (생략)

제13조(이용의 제한·금지 등)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별표의 전망대 체험시설---
4.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20 - 777호

##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4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기준점) 고시내역

[남해군]

연번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제정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	도근점	11084	중부	140074.64 290808.21	240383.58 290883.15	580.33	127-59-33.3541	34-45-18.6421	2020-06-05	이동면 신전리 신116-2	표정	남해군청	신규
2	도근점	11085	중부	140037.65 290773.69	240346.59 290848.63	578.42	127-59-31.9827	34-45-17.4529	2020-06-05	이동면 신전리 신116-2	표정	남해군청	신규
3	도근점	11086	중부	140061.65 290715.41	240370.59 290790.36	575.19	127-59-29.7011	34-45-18.2501	2020-06-05	이동면 신전리 신116-2	표정	남해군청	신규
4	도근점	11087	중부	140061.87 290675.86	240370.81 290750.81	575.00	127-59-28.1463	34-45-18.2699	2020-06-05	이동면 신전리 신116-2	표정	남해군청	신규

남해군 공고 제2020 - 787호

##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 2. 제정이유

남해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신변을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신고 범위의 지정(안 제1조, 제2조)
- 나. 신고 및 사실조사(안 제3조~제5조)
- 다. 피·신고인의 보호 및 성실의무(안 제6조~제7조)
- 라. 조사결과의 조치 및 신고보상금의 범위와 지급 기준(안 제8조~제12조)
- 마. 시행에 필요한 사항(시행규칙안)
  - 비밀보장을 위한 대장 등 관리(안 제3조)
  - 사실조사에 필요한 의견청취 방법(안 제4조)
  - 피·신고인의 불이익 방지 및 비밀보호 방법(안 제5조, 제6조)
  - 신고보상금 추천 및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연락처 : 전화055-860-3054, 팩스 055-860-3703, e-mail : k10110@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신변을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원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인”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행위
4. “신고보상금”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신고)** ① 누구든지 제2조제3호의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감사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신고서 보완 등)** ①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신고서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완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서를 폐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5조(사실조사 등)** ① 군수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에 걸리는 기간
2. 피신고인의 장기출장·휴직·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기간
3.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4. 그 밖에 조사 중 신고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늦어지는 기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신고인 등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한 사람과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등”이라 한다)의 신고내용 등 모든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인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인등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피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 공무원등은 신고인등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인등을 알아내기 위한 탐문을 하는 등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④ 신고인등은 피신고인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등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신고인의 모든 비밀을 보호하고, 피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성실의무)** ① 신고인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피신고인은 제5조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8조(조사결과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징계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인이 「형법」 제156조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신고인을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제9조(신고보상금)**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되, 여러 사람이 같은 사안을 신고한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결정은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다.

**제10조(신고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9조에 따른 신고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9조제2항에 따른 결정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1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부패행위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신고보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

**제12조(환수)**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1조 각 호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신고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 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별 표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유형별 지급 기준

구분	지급 대상	보상금 지급 기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제3호가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li> <li>•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20배 이내</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제3호나목 관련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 당시 추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단,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 이내 추가 지급</li> <li>• 지급 당시 추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추정액의 10% 이내 단, 사후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20% 이내 추가 지급</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제3호다목 관련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행위의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li> <li>• 알선·청탁행위 신고 : 1,000천원 이내</li> </ul>

2. 지급액의 상한액 기준

가. 신고보상금의 지급 상한액은 10,000천원으로 한다.

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지급 결정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신고인은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3조(관리대장)**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 제5조 및 제10조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원본과 대장을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진술서 등의 서류는 신고인 등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우편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대질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조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신고인 보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인등과 피신고인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분보장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인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준수)** ① 군수가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신고서 접수, 보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실명·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조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 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숫자 8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을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과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심사 서류는 회의 종료 후 원본만 남기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피신고인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조리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그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 시효와 관련한 징계 처분과 형사고발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8조(신고보상금 등)**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생기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신고보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 조 리 신 고 서 (제2조제1항 관련)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연 락 처	
	근 무 처		주 소	
피신고인 (신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증빙자료				
비 고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신청사유 ※ 신청사유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보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요청인 (인 또는 서명)

남해군수 귀하

**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접수증**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남해군 감사부서의 장 ○ ○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서식]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서

신 고 인	비밀번호
피신고인	비밀번호
신고내용	
사실조사 결과	
보상금 지급기준	
요청인 의견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 받아 그 사실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었으므로 신고인에게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 청 인 : 감사부서의 장 ○ ○ ○ (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20 - 801호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5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9. 11. ~ 2021.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97번지 외 55필지	하천정비 L=1,000m 교량설치 4개소	남해군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0. 6. 15.~2020. 6. 29.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0. 6. 15.~2020. 6. 29.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 입 용 지 조 서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잔여지	소유자		소유권이외
							주소	성명	권리자
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97	답	1,448	15	1,433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김 용 0	
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95	답	436	5	43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김 군 0	
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94	답	426	66	360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김 해 0	
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211	도	60	60		국 ( 국 토 교 통 부 )		
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73	답	635	368	267	부산 사하구 괴정동	정 경 0	
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315	임	7,603	44	7,559	남해군 이동면 상주리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정 신 0 김 귀 0	
7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 - 25	천	7,452	1,422	6,030	국 ( 국 토 교 통 부 )		
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72	답	746	231	51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김 정 0	
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 24	체	582	26	556	국 ( 기 획 제 정 부 )		
1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09 - 1	체	1,878	772	1,106	남해군		
1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2	체	17,941	411	17,530	남해군		
1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33	묘	1,018	143	875	-	최 두 0	
1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8 - 1	답	289	21	268	남해군		
1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8	답	303	303		남해군		
1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7 - 1	답	387	33	354	남해군		
1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7	답	73	60	13	남해군		
17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8	답	727	245	482	서울 양천구 신정동	김 준 0	
1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95	답	364	159	20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최 춘 0	
1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96	답	658	351	307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정 진 0	
2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	천	44,802	2,557	42,245	국 ( 국 토 교 통 부 )		
2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97	답	3,779	526	3,253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이 준 0	
2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98	답	1,097	308	78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김 재 0	
2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89 - 1	도	1,690	325	1,365	남해군		
2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 - 19	답	104	21	83	경상남도		
2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 - 8	답	194	44	150	국 ( 국 토 교 통 부 )		
2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 - 9	체	267	75	192	국 ( 국 토 교 통 부 )		
27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203	도	6,393	50	6,343	국 ( 국 토 교 통 부 )		
2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29	답	294	130	16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김 안 0	
2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30	답	415	3	412	남해군		
3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31	답	723	207	516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최 춘 0	
3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31 - 2	답	870	286	584	남해군		
3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09	답	654	20	634	남해군		
3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0 - 1	답	473	133	34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김 춘 0	
3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1	답	962	362	60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김 옥 0	
3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3 - 3	답	598	36	562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박 화 0	
3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3 - 2	답	397	30	367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박 화 0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잔여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
							주 소	성 명	권리자
37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3 - 1	답	10	5	5	서 울 강 동 구 천 호 동	김 준 0	
3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5	답	982	116	866	남 해 군 상 주 면 상 주 리	최 준 0	
3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6	답	843	473	370	남 해 군 상 주 면 상 주 리	박 춘 0	
4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7	답	2,264	129	2,135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박 동 0	
4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81	답	2,324	352	1,972	부 산 중 구 대 청 로	이 라 0	
4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80	답	694	44	650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강 현 0	
4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8	답	235	235		부 산 중 구 대 청 로	이 라 0	
4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7	답	499	72	427	남 해 군 상 주 면 상 주 리	박 성 0	
4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6 - 1	답	797	89	708	남 해 군 상 주 면 상 주 리	박 성 0	
4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5	답	714	22	692	남 해 군 상 주 면 상 주 리	손 남 0	
47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4	답	251	228	23	남 해 군 상 주 면 상 주 리	손 남 0	
4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6 - 2	답	1,478	38	1,440	남 해 군 상 주 면 상 주 리	손 남 0	
4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3 - 1	답	142	22	120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정 진 0	
5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69 - 1	답	519	210	309	남 해 군 상 주 면 상 주 리	송 성 0	
5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68	답	1,464	64	1,400	부 산 사 하 구 장 립 동	문 정 0	
5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2	답	939	292	647	경 상 남 도 김 해 시	정 진 0	
5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1	답	1,394	60	1,334	진 주 시 하 대 동	김 민 0	
5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1 - 1	도	292	194	98	남 해 군		
5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60 - 3	도	553	190	363	남 해 군		
	합계			123,132	12,683				
전체									

남해군 공고 제2020 - 814호

###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35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000	2020.06.19 2030.06.18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165번길 23	김일태 외 1명(정규현)	제29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36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000	2020.06.19 2030.06.18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51	최봉민 외 1명(정규현)	제30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37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000	2020.06.19 2030.06.18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165번길 7	방재윤	제31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38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000	2020.06.19 2030.06.18 (10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591번길 36	손상여 외 1명(이석민)	제32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39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000	2020.06.19 2030.06.18 (10년)	사천시 안숲외길 19, 101동1303호	문창을 외 2명(강성원, 김희선)	제33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40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새꼬막	창선 광천	50,000	2020.06.19 2030.06.18 (10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436번길 11-11	박종영 외 1명(김미숙)	제34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41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남면 선구	35,000	2020.06.19 2030.06.18 (10년)	남해군 남면 선구리	선구어촌계	제35호 재개발

※ '19/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29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000	2010.06.19 2020.06.18	남해읍 선소로 165번길 23	김일태 외 1명(정규현)	
남해양식 제130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000	2010.06.19 2020.06.18	남해읍 선소로 151	최봉민 외 1명(정규현)	
남해양식 제131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000	2010.06.19 2020.06.18	남해읍 선소로 165번길 7	방재윤	
남해양식 제132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000	2010.06.19 2020.06.18	창선면 서부로 591번길 36	손상여 외 1명(이석만)	
남해양식 제133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000	2010.06.19 2020.06.18	사천시 안숲외길 19, 101동1303호	문창을 외 2명(강성원 김희선)	
남해양식 제134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창선 광천	50,000	2010.06.19 2020.06.18	창선면 서부로 436번길 11-11	박종영 외 1명(김미숙)	
남해양식 제135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남면 선구	35,000	2010.06.19 2020.06.18	남면 선구리	선구어촌계	

남해군 공고 제2020 - 817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람·공고**

남해군 고시 제2018-130호(2018.08.30.)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남해군고시 제2019-163호(2019.11.29.)로 실시계획인가된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 사업의 변경사항이 있어 실시계획인가의 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643-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조성사업
- 명칭 :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1,468.6㎡
- 규모 : L=60m, B=10.0~3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담당부서:문화관광과)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5. 사업기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착수예정일	2019년 6월 15일	2019년 6월 15일(변경없음)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12개월	2021년 6월 15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 문화관광과(☎055-860-8623)비치)

## 8. 공람기간

-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남 해 군 공 보

(88) 제 666 호

2020년 6월 23일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m <sup>2</sup> )	편입 면적 ( 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차산리	643-4	잡	1,370.6	1,370.6		남해군	-	
2	남해읍 차산리	821-1	도	7.0	7.0		남해군	-	
3	남해읍 차산리	822-1	도	16.0	16.0	남해읍 북변리 389-4	김*민		
4	남해읍 차산리	823-1	도	22.0	22.0	남해읍 아산리 388-1	이*일		
5	남해읍 차산리	825-3	도	53.0	53.0	남해읍 차산리 712	김*욱		
합 계				1,468.6	1,468.6				

남해군 공고 제2020 - 818호

### 정치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 남 해 군 수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정치 제141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이동 신전	155,000	2020.06.19 2030.06.18 (10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203번길 35-5	박영준	재개발

○ 정치망 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정치 제64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이동 신전	155,000	2010.06.19. 2020.06.18. (10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203번길 35-5	박영준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남해군 공고 제2020 - 829호

### 분묘개장 공고(2차)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이동면 초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내에서 발견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 남 해 군 수

####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소재지	지 번	지 목	분묘기수
경남 남해군 이동면 초읍리	산 40-1, 산42-1, 산 40-6, 산 40-7	임	유연분묘 무연분묘 20기
	산 42-2, 산 40-3, 산 40-4, 산 40-5, 1675-1	도	
	1676-2	묘	

2. 개장사유 : 이동면 초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계인)와 협의 후 개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인 임의 개장
- ※ 안치 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추모노리 봉안당 (봉안 후 10년간 안치)

5. 신고처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055-860-3314, 3317)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7.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거나 누락된 분묘 또는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같음합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839호

### 군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교통광장)] 공사완료 공고

남해군 고시 제2018-12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남해군계획시설(교통광장)의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 남 해 군 수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교통광장)
- 명 칭 : 남해읍 우회도로입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3. 사업 시행면적 및 규모**

공사명	시설종류	위치	사업면적	비고
남해읍 우회도로 입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교통광장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일원	7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명칭) : 남해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 시행기간 :** 2018. 8. 3. ~ 2018. 8. 30.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